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558호

「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7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되어있는 본 고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본 훈령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(안 제8조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
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철도투자개발과)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
<http://molit.go.kr> > 정책자료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
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(검토의견)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5동)
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
- 전화 : 044-201-3960 / 팩스 : 044-201-5596